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희용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093 발의연월일: 2021. 12. 24.

발 의 자:정희용・金炳旭・김석기

김성원 · 김영식 · 김용판

김희곤 · 송언석 · 윤두현

지성호 · 최춘식 · 추경호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법령상 신고에는 행정청의 수리행위가 필요한 신고와 수리행위가 필요 없는 자기완결적(自己完結的) 신고가 있으나 현 원자력안전법 내 신고는 이를 구분하고 있지 않아, 국민의 법률 해석·적용의 일관성 및 명확성을 위해 이를 명확히 구분할 필요가 있음.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일정 기간 내에 수리 여부를 통지하되 미통지 시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나, 동 법 내 신고는 국민안전·환경 등과 관련된 원자력안전에 관한 사항으로서 반드시 신고내용의 적합성을 실질적으로 검토 후 수리할 필요가 있으므로 간주 규정 없이 수리를 요하는 신고임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수리가 필요 없는 신고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고, 수리가

필요한 신고는 신고내용을 검토하여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도록 명확히 명시하기 위해 동 법의 신고조문을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1 0조제7항 신설 등).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자력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제8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28조에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의2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1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5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제4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제4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제52조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제8항 및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제5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3조의2에 제8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54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0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8조의3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68조의4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6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 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8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95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건설허가) ① ~ ⑥ (생	제10조(건설허가) ① ~ ⑥ (현행
략)	과 같음)
<u><신 설></u>	⑦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2조(표준설계인가) ① ~ ⑦	제12조(표준설계인가) ① ~ ⑦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⑧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u>⑧</u> (생 략)	<u>⑨</u> (현행 제8항과 같음)
제15조(계량관리규정) ①・② (생	제15조(계량관리규정) ①・② (현
략)	행과 같음)
<u><신 설></u>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19조(승계 및 신고) ① ~ ③	제19조(승계 및 신고) ① ~ ③
(생 략)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

제20조(운영허가) $(1) \cdot (2)$ (생 략) 제20조(운영허가) $(1) \cdot (2)$ (현행과

<신 설>

③ (생략)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의 해체) ① ~ ⑨ (생 략)

<신 설>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 가) ① • 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 제30조의2(연구용원자로 등의 운 영허가) ①・② (생 략) <신 설>

리하여야 한다.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28조(발전용원자로 및 관계시설 의 해체) ① ~ ⑨ (현행과 같 음)

⑩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30조(연구용원자로 등의 건설허 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영허가)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③ (생 략)

항 신고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신고) (생 략)

<신 설>

등) ① ~ ④ (생 략) <신 설>

⑤ (생 략)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제42조(핵연료주기시설의 해체)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31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출 제31조(외국원자력선의 입항・출 항 신고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

제33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제33조(사업의 중단ㆍ폐지 등의 신고)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 과 같음)

>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

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제35조(핵연료주기사업의 허가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 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① · ② (생 략)

③ • ④ 삭 제

<신 설>

제43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생 제43조(사업개시 등의 신고) ① 략)

<신 설>

가)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제52조(핵원료물질의 사용신고 등) ① ~ ⑥ (생 략) <신 설>

⑦・⑧ (생 략)

① · ② (현행과 같음)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 제45조(핵연료물질의 사용 등 허 가) ①·② (현행과 같음)

>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

8 · 9 (현행 제7항 및 제8항과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 | 제53조(방사성동위원소・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④ (생략)

~ ⑦ (생 략) <신 설>

③ (생략) <신 설>

④ (생략)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 | 제60조(방사선발생장치 등의 설계 승인 등) ① ~ ④ (생 략)

같음)

발생장치 사용 등의 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 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 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① 제53조의2(방사선안전관리자) ① ~ ⑦ (현행과 같음)

> ⑧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① ~ | 제54조(업무대행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승인 등) ① ~ ④ (현행과 같 음)

<신 설>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제63조(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 의 건설·운영 허가) ①·② (생 략)

<신 설>

③ (생 략)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 제68조의3(방사성폐기물저장시설 등의 해체) ① • ② (생 략)

<u><신</u> 설>

③ (생략)

등의 폐쇄) ① ~ ⑤ (생 략)

<신 설>

⑤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의 건설·운영 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등의 해체) ① · ② (현행과 같 음)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현행 제3항과 같음)

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제68조의4(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 등의 폐쇄) ① ~ ⑤ (현행과 같 음)

> ⑥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제71조(운반신고) ① · ② (생 략) | 제71조(운반신고) ① · ② (현행과

<신 설>

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 제76조(운반용기의 설계승인) ① · ② (생 략)

<신 설>

기 등의 설계승인 등) ① ~ ③ (생 략)

<신 설>

③ (생략)

<신 설>

를 수리하여야 한다.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 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 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 제77조의2(사용후핵연료 저장용 기 등의 설계승인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 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를 수리하여야 한다.

제78조(판독업무자의 등록) ① ~ 제78조(판독업무자의 등록)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

④ (생 략)

제95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 제95조(허가 등의 취소 또는 사업 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 ③ (생 략)

<신 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폐지 등에 따른 조치)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 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 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 리하여야 한다.